

[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]

에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(이하 '회사'라한다)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,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.

1.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정보교류통제 담당 총괄책임자: 준법감시인
- (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: 리스크관리팀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- (1) 자본시장법 제 174 조제 1 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(2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(3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3. 차단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

- (1) 투자자가 보유한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(4)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동법 제 33조의 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(5)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자본시장법 제 229 조제 3 호에 따른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(6)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(7)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

4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

- (1)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
 -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각 부서로 하고,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부문별 책임자는 각

부서장으로 지정한다.

-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 3 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한다.

(2)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- ① 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전의 정보
- ③ 집합투자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되기 전의 정보
-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로 지정한 정보

5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목록 지정 기준

- (1)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 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다.
- (2)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.

6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

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	대응방안
회사와 투자자와의 거래	①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,무형의 정 보차 단벽을 설치하여 이해상충가능성 차단
회사와 임직원과의 거래	
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거래	②정보교류 통제 담당임원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 해소 후 거래 ③이해상충 방지 관련 임직원 교육 실시
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거래	
	④이해상충 유형별 모니터링 실시

7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(1)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

-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.
-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,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사용 내역 보고 등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.

(2)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

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·운영한다.

- 사무공간의 분리
-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
-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의 회의·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
-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·운영

(3) 예외적교류

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,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.

-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
-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(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·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을 것
-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
-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
-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
-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(5년) 이상 유지·관리할 것